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2022. 6. 21.(화)	상담유형	[] 방문 [●] 전화 [] 기타()
상 담 요청자	성명	김○○	생년월일
	소속/직위(직급)	○○○○팀 / ○○	연락처
			031-560-○○○○

상담 내용 임원 자녀 결혼식 축의금 지급 가액 범위에 대한 문의

상담 결과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사안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이 결혼식에 참여한 하객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공직자등이 수수한 경조사비의 가액 평가 시 식대 등의 공제·상계는 인정되기 어려우며, 공직자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경조사비는 5만원까지 허용 됩니다.

2022년 6월 21일

행동강령책임관

감사실장 이 희 관

(서명 또는 인)